



보도 일시	2022. 12. 14.(수) 배포 즉시	배포 일시	2022. 12. 14.(수)
담당 부서	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정책과	책임자	과 장 김일규 (042-481-5213)
		담당자	사무관 이우정 (042-481-8227)

산업재산권 분쟁, 법원소송에서 분쟁조정으로

- 특허청 · 서울중앙지법 · 한국지식재산보호원
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-

□ 내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특허·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및 영업비밀·부정경쟁행위 관련 분쟁을 특허청의 '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'를 통해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.

○ 특허청(청장 이인실)과 서울중앙지방법원(법원장 성지용), 한국지식재산보호원(원장 김용선)은 12월 14일(수) 11시, 서울중앙지방법원 14층 회의실에서 '법원 연계형 조정*'을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조정제도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」을 체결했다.

* 법원의 본안재판부가 변론기일 이전 또는 본격적인 재판 시작 이전에 사건을 분쟁해결기관에 조정 회부하면 외부전문가가 주도하여 조정을 수행하는 제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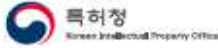
□ 이번 협약으로, 서울중앙지법은 접수된 사건 중 지식재산 전문성이 필요하고,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한 사건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로 연계하며, 분쟁조정위원회는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가로 이루어진 조정부를 구성하여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.

○ 이러한 과정을 거쳐 조정이 성립될 경우 소송을 계속 진행할 때 부담하게 될 막대한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.

□ 이외에도 세 기관은 조정제도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조정위원 교육 시 상호 협력하고, 조정 관련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는 등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.

- 이인실 특허청장은 “전국 지방법원 중 가장 많은 지식재산 사건을 접수·처리하는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뜻깊다”며 “보다 많은 지재권 분쟁 사건이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- 성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“당사자들이 전문성 있는 조정위원을 통해 신속하면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기를 기대한다”며 “법원과 특허청 모두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의 노하우를 쌓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.”라고 밝혔다.
-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은 “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식재산 분야 조정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”며 “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지식재산보호원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”고 밝혔다.
- 한편,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청에서 산업재산권(특허·상표·디자인·실용신안권) 및 직무발명, 영업비밀, 부정경쟁행위 등의 분쟁을 신속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'95년 설립한 위원회로,
 - 조정 신청을 하면, 별도의 신청 비용 없이, 3개월 내에 전문가에 의한 조정 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,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, 개인·중소기업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.
- 아울러, 산업재산권 등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, 개별적으로도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.
 - 지식재산보호원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(www.koipa.re.kr/adr)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,
 -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(1670-9779)을 통해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.

※ 행사 사진은 행사 직후 배포 예정



“ 특허, 상표, 영업비밀 등의 분쟁은?
이제 조정으로 해결하세요!
**산업재산권
분쟁조정제도** ”



⌘ 산업재산권 분쟁제도란?

산업재산권 분쟁에서 소요되는 비용·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[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]에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여 상호 간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

⌘ 신청 분야

- 산업재산권 분쟁 (특허·상표·영업비밀 등)
- 직무발명 관련 분쟁
- 영업비밀 관련 분쟁
- 부장관명령위 관련 분쟁

⌘ 산업재산권 분쟁제도의 장점

- 신속한 분쟁해결 (3개월 이내)
- 간편 절차 (신청비용 무료)
- 절차 비용제 (비밀 보장)
- 전문가의 온디맨드 분쟁해결 지원

⌘ 신청 자격

- 산업재산권자·실사권자·사용권자
- 직무발명자·영업비밀 보유자
- 부장관명령위의 분쟁 당사자
- 관리실사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

⌘ 신청 방법



홈페이지 www.kopia.re.kr/fadr
우편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
T 1670-9779 F 02-553-5865 E-mail ip.adr@korea.kr

⌘ 산업재산권 분쟁제도의 효력

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



- ◆ **법원 연계형 조정이란?** 법원의 본안재판부가 변론기일 이전 또는 본격적인 재판 시작 이전에 사건을 분쟁해결기관에 조정 회부하면 외부전문가가 주도하여 조정을 수행하는 제도

1] 조정 회부(서울중앙지법)

- 서울중앙지법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, 담당 재판부가 사건 분류 단계에서 조정 회부 결정

2] 조정사건 연계(서울중앙지법 →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)

-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건 특성 및 당사자를 고려하여,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로 연계
- 서울중앙지법에서 분쟁 당사자 간 제출자료 및 사건 기록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로 송부

3] 조정 진행(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)

-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 사건을 접수하고, 조정위원 별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, 해당 사건에 적합한 3인 이내 조정부를 구성
- 조정부가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, 서울중앙지법에 조정결과를 송부

4] 조정사건 종료(서울중앙지법)

- (합의 성립)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합의가 성립되는 경우, 합의 내용대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송달 후 확정 시 '재판상 화해'와 동일한 효력
- (합의 불성립) 소송 절차 진행